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건강관리과-4867 |
| 결재일자 | 2015.3.16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★주무관 | 가족보건담당 | 건강관리과장 | 보건소장 | | |
| 주은지 | 代주은지 | 이응철 | 03/16 황원숙 | | |
| 협 조 | | | | | |

2015년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사업 계획



성북구보건소
[건강관리과]

2015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사업 계획

병원 이용이 어렵고 장기적인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재가 환자에게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의 지속성 유지 및 심리적 안정감 도모, 의료비 부담 절감으로 의료 형평성 해소에 기여

1 사업 추진 경위

□ 가정간호 법적근거

- 의료법 제33조 1항 4조(의료기관 개설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(가정간호)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

□ 사업추진경과

- 2002년 서울시 가정간호실시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시작
- 2013.9.26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 등 사회제도적 변화에 따라 가정간호지원사업 서울시 시비 지원 폐지(자치구 사정에 맞는 방안 고려)
- 2014년부터 구비100% 확보로 사업 지속 추진

□ 우리구 사업 추진방향 검토

-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분야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**이중중복지원 및 예산낭비 요인이 있음을 고려**해야 하지만,
- 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**사각지대에 있는 틈새 취약계층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함**

[참고]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분석

| 구분 | 장애인활동지원 | 노인장기요양보험 |
|------|--|---|
| 근거법 |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|
| 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만6~65세 1~2급 장애인 *2015. 6.부터는 3급 까지로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만65세 이상 1~5등급 노인 및 치매 *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포함 |
| 급여종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활동보조(신체, 가사, 이동보조 등) ▪ 방문목욕(요양보호사가 목욕 제공) ▪ 방문간호 (간호사 등이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의 ‘방문간호지시서’에 따라 처지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가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방문요양(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), ▪ 방문목욕(가정방문 목욕 제공), ▪ 방문간호 (간호사 등이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의 ‘방문간호지시서’에 따라 처지) ▪ 단기보호 2. 시설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|
| 제공기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상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·비영리·민간기관 ▪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상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·비영리·민간기관 ➔ 방문목욕, 방문간호 수행 *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, 지역자활센터 우선 지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노인복지법」 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▪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·인력기준을 갖춘 기관 |
| 본인부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초수급자 면제 ▪ 차상위계층 정액20,000원 ▪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액의 6~15% * 기본급여 1등급 1,040,000원, 2등급 834,000원 3등급 628,000원, 4등급 422,00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초수급자 면제 ▪ 재가급여 15% ▪ 시설 급여 20% * 1등급 1,185,300원, 2등급 1,044,300원 3등급 964,800원, 4등급 903,800원 5등급 766,600원 |

2 사업 현황

□ 연도별 지원 현황

| 년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2월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실인원 | 17명 | 25명 | 12명 | 4명 |
| 예산액 | 36,000천 원 | 30,000천 원 | 20,000천 원 | 12,000천 원 |
| 집행액 | 35,999천 원 | 29,684천 원 | 19,994천 원 | 1,291천 원 |

□ 가정간호 의료기관 현황

- 서울대병원, 고려대병원, 성바오로병원, 경희대병원

3 사업 개요

□ 추진방향

-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지속 추진
 - ↳ 현재 가정간호의료비지원 대상자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추구관리(본인 동의 선행)
- 저소득 틈새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
- 지원대상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로 대상기준 완화하여 실시
 - **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50% ⇒ 가정간호 필요한 취약계층인 일반인까지로 완화

□ 지원대상 : 취약계층 재가환자 중 가정간호 필요한 대상자

(★ 장애인활동지원,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간호 수혜자는 제외)

□ **대상기준**

- 1순위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2순위 : 차상위 계층(최저생계비 120%,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- 3순위 :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된 자

★ 매년 가정간호 중지없이 시행중인 기존 대상자는 소득 재심사 없이 계속지원

□ **지원내용 : 가정간호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아래의 처치**

- 유치 도뇨관 교환 및 관리, 비위관 교환 및 관리
- 욕창 및 상처치료, 봉합선 제거
- 투석액 교환 및 도관청소, 투약 및 주사 행위
- 기관 절개관 교환 및 관리, 인공호흡기 관리 및 감염관리 교육
- 검사행위(혈액, 소변, 가래, 등) 및 검사물 채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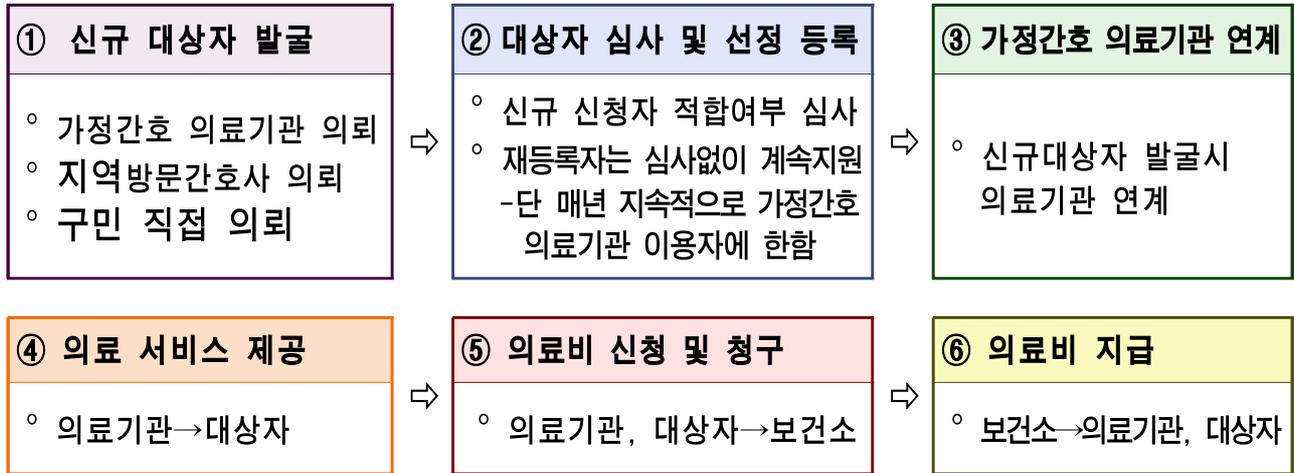
□ **지원범위**

- 지원 기준 : 가정간호의료기관 이용 본인부담금
- 지원 한도 :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(예산범위내에서 지원)
- 지원 개시 :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
- 지원 종료 : 지원 부적격자로 결정 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달까
지만 지급 (사망, 전출, 기타 등)

□ **지원신청 시 구비서류**

| 구 분 | 의료비 신청 서류 | 의료비 청구 서류 |
|------|--|--|
| 필수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지원 신청서 1부◦ 진단서 1부(소견서 등 가정간호 대상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)◦ 주민등록등본◦ 소득확인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지원 청구서 1부◦ 진료비 영수증◦ 입금통장사본 |

□ 지원절차



4 사업예산

- 사업예산 : 12,000천원 (구비 100%)
- 산출내역 :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및 의료 소모품 구입

5 기대효과

-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해소
-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- 재가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. 끝.